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314호(號) 1928(昭和 3)년 1월 19일 목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3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8호(號)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(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) 별표(別表) 화물특정임률표(貨物特定賃率表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8(昭和 3)년 1월 19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국선(局線) 내(內) 특정임률(特定賃率)의 부문[部] 된장[味噌], 간장[醬油: 병조림을 제(除)함]의 항(項) 다음에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품목(品目)	발역(發驛)	착역(著驛)	급종별(級種別)	임률(賃率)	기사(記事)
얼음[氷]	노량진(鷺梁津), 용산(龍山), 백마(白馬), 선교리(船橋里), 서빙고(西氷庫), 철원(鐵原), 신의주하급소(新義州荷扱所)	대구(大邱), 마산(馬山), 진해(鎭海), 군산(群山)	차급(車扱)	2 割 5 分(分) 감(減)	본(本) 임률(賃率)은 1928(昭和 3)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(適用)함
	동(同)	기타의 각(各) 역(驛)	동(同)	백51마일(哩·mile) 이상 2 割(割) 감(減)	